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1191 호 2019. 8. 22.(목)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8호[달천농공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9호[달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고시].....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90호[송정동 통·반 조정 고시]..... 18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91호[도로명주소 부여 고시]..... 19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92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..... 21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943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]..... 22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944호[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] 30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9 - 188호

달천농공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의 달천농공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명칭 ·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- 가. 명 칭 : 달천농공단지
- 나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
- 다. 면 적 : 259,634.3m²

2. 사업의 목적

-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회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,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공업입지공급
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
-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없음)

- 가. 개발기간 : 1997년 ~ 1999년 (준공)
- 나. 시행방법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영개발

5.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(변경없음)

- 가. 유치업종 : 기계 및 조립, 금속 제조업 등(무공해업종)
- 나. 업종별 배치계획 : 관리기본계획상의 유치업종
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(변경)

가.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259,634.3	-	259,634.3	100.0	
자연 녹지 지역	7,043.9	-	7,043.9	2.7	
일반 공업 지역	252,590.4	-	252,590.4	97.3	

나. 세부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증 감	변 경		
계	259,634.3	-	259,634.3	100.0	
산업시설용지	194,108.2	-	194,108.2	74.8	
지원시설용지	5,867.7	증) 1,930.6	7,798.3	3.0	
공동이용시설	5,867.7	-	5,867.7	2.3	
청년창업시설	-	증) 1,930.6	1,930.6	0.7	
공공시설용지	57,262.9	감) 1,930.6	55,332.3	21.3	
도 로	34,238.7	-	34,238.7	13.2	
주 차 장	3,565.0	-	3,565.0	1.4	
녹 지	17,528.6	-	17,528.6	6.7	공원포함
오 폐수처리장	1,930.6	감) 1,930.6	-	-	
보전용지(묘지)	2,395.5	-	2,395.5	0.9	

다. 주요 기반시설계획(변경)

1) 총 관

(면적 : m²)

구 분	도 로	주 차 장	공 원 · 녹 지	수질오염방지시설
기 정	32,435.4	3,565.0	17,528.6	1,930.6
변 경	32,435.4	3,565.0	17,528.6	-

2) 도 로(변경없음)

가) 도로 총괄표

구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m ²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m ²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m ²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m ²)
합계	14	2,859	32,435.4	9	1,674	16,763.4	2	403	5,380.0	3	782	10,292.0
중로	3	1,008	14,420.0	-	-	-	1	308	4,620.0	2	700	9,800.0
소로	11	1,851	18,015.4	9	1,674	16,763.4	1	95	760.0	1	82	492.0

주) 도로면적 합계는 각각부 면적 1,803.3m² 제외면적임

3) 공 원(변경없음)

가)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44	소공원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-2번지	1,156.2	-	1,156.2	10.4.8 울(북)고 28호	

4) 녹 지(변경없음)

가) 녹지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 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418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0번지 일원	7,369.2	-	7,369.2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19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2번지 일원	973.9	-	973.9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20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-3번지 일원	1,248.3	-	1,248.3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21	녹지	완충 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8-1번지 일원	6,781.0	-	6,781.0	10.4.8 울(북)고 28호	

5) 주 차 장(변경없음)

가) 주차장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 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203	주차장	북구 달천동 207-5번지 일원	1,653.0	-	1,653.0		
기정	204	주차장	북구 달천동 212-8번지 일원	1,009.1	-	1,009.1		
기정	205	주차장	북구 달천동 214-2번지 일원	902.9	-	902.9		

6) 수질오염방지시설(변경)

가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3	폐수 처리장	폐수종말 처리시설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2-10번지 일원	1,930.6	감) 1,930.6	-	'00.3.10. 울고33호	시설 폐지

나)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폐수종말 처리시설	·시설폐지 (감1,930.6㎡)	· 기능 폐쇄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청년창업 관련 지원시설 조성

7.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
8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조서(변경없음) : 생략

9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- 1) 총괄조서(울산광역시)(변경없음) : 생략
- 2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259,634.3	-	259,634.3	100.0	
자 연 녹 지 지 역	7,043.9	-	7,043.9	2.7	
일 반 공 업 지 역	252,590.4	-	252,590.4	97.3	

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1) 도로(변경없음)

가) 도로 총괄조서

구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14	2,859	32,435.4	-	-	-	-	-	-	-	-	-
종로	3	1,008	14,420.0	-	-	-	1	308	4,620.0	2	700	9,800.0
소로	11	1,851	18,015.4	9	1,674	16,763.4	1	95	760.0	1	82	492.0

주) 도로면적 합계는 각각부 면적 1,803.3㎡ 제외면적임

나) 도로 세부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종로	2	151	15	집산도로	308	중1-336	중3-174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종로	3	174	14	집산도로	195	중2-151	소1-47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종로	3	173	14	집산도로	505	중3-174	소1-51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46	10	국지도로	101	소1-47	북구 달천동 218-4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47	10	국지도로	370	중3-173	북구 달천동 208-1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48	10	국지도로	78	중3-174	북구 달천동 208-6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49	10	국지도로	95	소1-47	북구 달천동 203-8	일반도로		'00.3.10 울고33호	04.12.6 울북고49호
기정	소로	1	50	10	국지도로	367	중2-151	중3-173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51	10	국지도로	236	중3-173	소2-319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52	10	국지도로	218	중3-173	소2-319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53	10	국지도로	128	중3-173	북구 달천동 221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1	72	10	국지도로	81	소1-46	북구 달천동 201-1	일반도로			
변경	소로	2	319	8	국지도로	95	소1-51	소1-52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기정	소로	3	2	6	국지도로	82	소1-50	북구 달천동 211-5	일반도로			'00.3.10 울고33호

2) 공원(변경없음)

가)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44	-	소공원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-2번지	1,156.2	-	1,156.2	10.4.8 울(북)고 28호	

3) 녹지(변경없음)

가) 녹지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418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0번지 일원	7,369.2	-	7,369.2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19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22번지 일원	973.9	-	973.9	10.4.8 울(북)고 28호	
변경	420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-3번지 일원	1,248.3	-	1,248.3	10.4.8 울(북)고 28호	
기정	421	녹지	완충녹지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8-1번지 일원	6,781.0	-	6,781.0	10.4.8 울(북)고 28호	

4) 주차장(변경없음)

가) 주차장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203	주차장	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7-5번지	1,653.0	-	1,653.0	10.4.8 울(북) 고 28호	
기정	204	주차장	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2-8번지	1,009.1	-	1,009.1	10.4.8 울(북) 고 28호	
기정	205	주차장	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4-2번지	902.9	-	902.9	10.4.8 울(북) 고 28호	

5) 수질오염방지시설 (변경)

가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3	폐수 처리장	폐수중 말처리 시설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12-10번지	1,930.6	감) 1,930.6	-	'00.3.10 울고33호	시설 폐지

나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폐수중말 처리시설	· 시설폐지 (감1,930.6㎡)	· 기능 폐쇄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청년창업 관련 지원시설 조성

10. 관련도서 열람방법

- 관계도면에 대하여는 게재를 생략하며,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(☎ 052-241-771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189호

달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달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I. 농공단지 일반현황

1. 관리기관 : 울산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
2. 조성목적
 -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농민에 대한 고용기회 부여
 - 관내 중소기업의 부지난 해소로 중소기업 지원
 - 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
3. 조성근거법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
4. 위 치 :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

5. 추진경위

- 1997. 3. 11. : 달천농공단지 지정 승인(경상남도)
- 1997. 7. 11. : 실시계획 승인(울산시)
- 1999. 1. 7. : 실시계획 변경승인(북구)
- 1999. 8. 12. : 실시계획 변경승인(북구)
- 1999. 9. 17. : 준공인가(북구)
- 1999. 9. 22. : 관리기본계획 승인(울산광역시 고시 제1999-128호)
- 2002. 2. 14. :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(울산광역시 고시 제2002-20호)
- 2004. 12. 6. : 실시계획 변경승인(북구 고시 제2004-49호)
- 2010. 4. 8. :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북구 고시 제2010-28호)
- 2012. 3. 19. : 실시계획 변경승인(북구 고시 제2012-34호)
- 2016. 7. 14. :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(북구 고시 제2016-116호)
- 2018. 6. 7. :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(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-126호)
- 2019. 8. 22. :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(북구 고시 제2019-188호)

6. 분양현황

산 업 단지명	총면적 (㎡)	분양가능면적(㎡)				분양	조성 기간	조성기관
		계	미분양					
			조성	미조성	소계			
달 천 농공단지	259,634.3	194,108.2	-	-	-	194,108.2	'97.7.11.~ '99.9.17.	울산공동화 사업협동조합

7. 입주현황(변경)

구분	입주업체수			면적(㎡)			비고
	계	제조업	지원기관	계	제조업	지원기관	
입주	86	83	3	201,906.5	194,108.2	7,798.3	

8. 입지여건(변경)

시 설 명	시설현황	확 충 계 획
도로	-진입도로 B=13.5m L=313.83m -간선도로 B=13.5m L=997.9m -지선도로 B=10.0m L=1,650.29m -지선도로 B=8.0m L=93.5m -지선도로 B=6.0m L=96m	※ 울산→경주간 7호 국도와 연결
용수(상수도)	-울산광역시 상수도 시설계획에 의하여 설치	
전력	-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	
통신	-한국통신공사에서 시공	
배수시설	-우수관로 L=5,230.5m 우수지선 L=1,847.5m B-플룸관 L=752m U-플룸관 L=2,631m -오수관로 L=2,704m	
가로등	-54기(나트룸등)	
공동이용시설	-연면적 831.84㎡(2층) 1동	

※ 오폐수처리장 폐지(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-188호)

II.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

1. 관리기본방향

- 농공단지 시설물 및 입주업체의 효율적 관리
- 공해없는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
-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

2.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(변경)

구 분	면 적(m ²)			비고
	당초	변경	증감	
계	259,634.3	259,634.3		
공 장 용 지	194,108.2	194,108.2		
도 로	34,238.7	34,238.7		
공동이용시설	5,867.7	7,798.3	증)1,930.6	청년창업시설
폐수종말처리장	1,930.6	0	감)1,930.6	시설폐지
기 타	23,489.1	23,489.1		

※ 오폐수처리장 폐지(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-188호)

3. 입주대상업종,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(변경)

가. 입주대상업종(변경)

○ 산업시설구역

- 저공해 제조업으로서 기계, 금속, 전자제조업종 등
- 지붕(옥상), 벽체에 설치하는 태양력 발전업(35114)
-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규정에 의한 입주할 수 없는 다음 사업장 제외
 -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·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 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,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
 - 1일 폐수배출량이 2,000m³이상인 사업장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
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35조의 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
 - 폐수배출 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

○ 지원시설구역

-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·보험·의료사업 및 식당 등의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나. 입주자격

○ 산업시설구역

- 기계, 금속, 전자 등 저공해 제조업체
- 환경성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종

○ 지원시설구역

-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자
- 금융·보험·식당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

다. 입주우선순위

- 건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
- 저공해 제조업
- 입주신청순서에 따라 분양

4. 생산·수출 및 고용전망

가. 생산 및 수출전망

입주업체수	년간생산량	비고
83개	1,460억원	업체당 평균 연간 17.6억원 예상

※ 대다수 입주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자체수출전망은 미약하나 향후 간접수출 지원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.

나. 고용전망

업체수	고용인원	비고
83개	1,700명	

5. 임금소득,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

가. 임금소득 증대전망

업체수	고용인원	1인평균임금(년)	소득증대효과	비고
83개	1,700명	12백만원	204억원	

나.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

- 농공단지조성 및 공장건축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예상
-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부자재수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

6.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

가. 직종별 인력수요전망

업종별	인력수요(명)	비고
계	1,700	
금속기계 제조업	1,010	
비금속광물 제조업	270	
화학제품 제조업	120	
기타	300	

나.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

지역	취업가능인원(추정)	실업률	고용가능인원(추정)	비고
북구	계 8,591명	2.1%	180명	사무직:25명 기능직:45명 단순노무:110명
	농소1,2,3동 5,254명			
	송정동 1,140명			
	효문동 1,038명			
	기타지역 1,159명			

※ 대부분 이전 업체로서 기존 인력을 재고용하고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신규 고용근로자가 필요시 인근지역 고용가능 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7.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방안

가. 인근 농공단지

(단위:천㎡, 2017. 4/4분기 기준)

단지명	지정 면적	지정 일자	분양 면적	분양율	입 주 업체수	주요 업종	고용 현황
계	328.45		263.39		30		2,362
상북농공단지 (상북면)	132.23	86.12.8	106.67	100%	12	전기·기계	783
두서농공단지 (두서면)	128.73	90.2.2	100.84	100%	14	기계·금속	884
두동농공단지 (두동면)	67.49	93.12.16	55.88	100%	4	"	695

나.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

(면적단위 : 천㎡)

단지명	지정 일자	입주 기업체	고용 인원	구성(대상)면적			공장용지면적			공공 시설 및 지원 시설
				총면적	구성	미구성	총면적	구성	미분양	
울산미포 산업단지	'66.7.20.	514	87,876	46,135	34,567	5,773	30,296	30,296	4,248	

다. 농소지역 공장(제조업) 현황

구분 \ 업종별	계	금속기계	비금속광물	화학	목재·제지 제품	기타
공장수 (개)	100	81	5	6	5	3
고용인원(명)	1,727	1,413	138	101	47	28

라.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방안

- 동종의 제조업이 밀집하여 상호정보교류 용이
- 대다수 인근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공동기술개발과 판로가 동일하므로 업체의 의지에 따라 지원협력 용이
-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입지여건 기반시설 확보
- 입주업체 생산품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 적극 추진
 - 인터넷망(홈페이지 등) 활용 입주업체 정보망 구축

8.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

가. 용도별 구획계획(변경)

구분	면적(m ²)			비고
	당초	변경	증·감	
계	259,634.3	259,634.3		
산업시설	194,108.2	194,108.2		
지원시설	5,867.7	7,798.3	증)1930.6	
공공시설	39,734.3	37,803.7	감)1930.6	
녹지시설	19,924.1	19,924.1		

나. 공장 배치계획

업종별 \ 구분	업체수	면적(m ²)	비고
계	88	194,108.2	
조립금속제품 제조업	38	77,926.9	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3	74,029.5	
가구 및 기타 제조업	8	17,936.4	
전기·가스 및 증기업	2	7,250.1	
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	6	13,347.1	
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	1	3,618.2	

9. 공동이용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계획(변경)

가. 지원시설 설치현황

사업명	시설명	기간	사업내용	비고
공동이용시설물	식당·슈퍼	'99. 5. 1 ~ '99. 9. 17	부지면적 : 1,574m ² 건축연면적 : 831.84m ²	
청년창업시설	청년지원 제조공간	'20. 1. 1 ~ '20. 6. 30	부지면적 : 1,930m ² 건축연면적 : 990m ²	
폐수종말처리시설	폐수종합처리장	'99. 3. 1 ~ '99. 8. 24	부지면적 : 1,930m ² 건축연면적 : 325.26m ²	시설 폐지
근로자 지원시설	달천조합식당	'00. 6. 1 ~ '00. 8. 8	부지면적 : 826.1m ² 건축연면적 : 599.6m ²	

※ 오폐수처리장 폐지(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8호)

나. 운영계획

- 공공이용건축물 : 울산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위탁
- 청년창업시설 : 전문기관 관리 위탁
- 근로자지원시설 :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 관리운영
- 폐수종말처리장 폐쇄로 농공단지 내 협잡물제거 스크린, 저류조, 우·오수관로 관리 : 울산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위탁

10.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·운전자금 및 기술지원

가.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

- 지원자금 종류 : 시설 및 운전자금
-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10일
- 신청장소 : 울산광역시 기업육성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부
 - 시설자금 : 7억이내, 5년거치 5년 균등상환(연 5.5%)
 - 운전자금 : 3억이내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(연 5.5%)

나. 기술지원

- 공장자동화를 위한 생산기술 연구지원
- 기술 및 정보이용 설명회 개최
-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
- 수출상품의 고품위화 및 고부가가치화
- 각종 산업기술 정보지원으로 경쟁력 강화

11. 입주업체 사후관리 계획

- 환경성 검토결과 부여조건 이행철저
-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의 지속적 확충
-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로 산업평화 정착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 강화
- 입주계약서상의 계약사항 이행여부 관리감독 철저
-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운영
- 분양용지의 불법전매, 장기유휴화 등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90호

송정동 통·반 조정 고시

「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통·반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시행일자 : 2019. 8. 22.

통·반 조정내역

구 분	통			반			비고
	현 행	조 정	증 감	현 행	조 정	증 감	
계	262	264	증 2	2,444	2,462	증 18	
농소1동	35	35	-	418	418	-	
농소2동	45	45	-	496	496	-	
농소3동	39	39	-	427	427	-	
강동동	32	32	-	204	204	-	
효문동	34	34	-	300	300	-	
송정동	35	37	증 2	335	353	증 18	
양정동	20	20	-	123	123	-	
염포동	22	22	-	141	141	-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191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동산길 100-6 외 8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**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8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
1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279-16 외 1(279-18)	울산광역시 북구	동대6길 3	2019-08-22	동대로에 분기하드로일 련번호방식에 의하여도 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
2	울산광역시 북구	대안동 788	울산광역시 북구	동남로 479-59	2019-08-22	동에서남쪽으로 가로지 르는 도로라서 동남로로 부여	2011-02-11
3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동 399-1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로 204	2019-08-22	매곡동의 지명을 반영하 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01-03-22
4	울산광역시 북구	중산동 1005-2	울산광역시 북구	약수8길 12	2019-08-22	기존 자연마을인 약수마 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
5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지구 12B 12L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1길 24	2019-08-22	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	2018-05-10
6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지구 D32B 2L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24길 9	2019-08-22	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	2018-05-10
7	울산광역시 북구	천곡동 238-5	울산광역시 북구	분통골길 33-8	2019-08-22	기존 지명인 분통골에 위 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 였다.	2004-08-09
8	울산광역시 북구	상안동 946-1	울산광역시 북구	동산길 100-6	2019-08-22	동대마을 명칭을 사용해 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04-08-09
9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지구 D90B 5L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10길 19	2019-08-22	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	2018-05-10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192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동산길 96-7	상안동 946-1	2019. 8. 22.	건축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
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
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9. 8. 22.**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-943호

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가. 기 간 : 2019. 8. 22. ~ 9. 11.(20일간)
 나. 방 법 : 구 공보 및 홈페이지
 다. 개정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

2019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제정이유

- 최근 3년이상 미개최한 위원회로써 목적, 기능상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「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」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투표정수 심의회 비상설화 (안 제12조 제1항, 제5항)
- 심의안건 발생시 구성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주민투표 절차 종료까지로 함
- 나. 심의회 운영관한 사항 내용 보완 (안 제13조 제2항)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4조 (주민투표)

나. 「주민투표법」 제7조 (주민투표의 대상) 및 제9조 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

4. 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주민소통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처

- 주소 : 우)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주민소통실
- 전화번호 : 052)241-7264, 팩스번호 : 052)241-7269

6. 기타사항

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관계법령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”을 “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”을 “행정동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”을 “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각종”을 “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”으로, “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”을 “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규정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은”을 “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주민투표절차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찬성”을 “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”를 “이상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「주민투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<u>동의 명칭</u> 및 구역변경, 폐치·분합</p> <p>2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<u>행정동의</u> 구역변경, 폐치·분합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3. 다수 <u>주민의 이용에</u> 제공하기 위한 <u>주요공공시설의</u>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4. <u>각종</u> 기금의 설치, 지방채 발행, <u>민간투자사업의</u> 실시에 관한 사항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법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<u>규정</u>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주민</p>	<p>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동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행정동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---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 시 설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<u>법령상</u> 기금이외의 <u>각종</u> ----- <u>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</u> 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<u>지나친 부담을 주는</u> 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.</p> <p>-----</p>

복리·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

- 다른

제13조(심의회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3조(심의회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-----

-----.

- 1. ~ 4. (생략)
- ② ~ ④ (생략)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위원의 임기는 주민투표절차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

⑥ (생략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심의회 운영) ① (생략)

제14조(심의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-----
-----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-----.

③ ~ ⑧ (생략)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공표방법 등) 법 제8조제2항·제9조제4항·제10조제2항·제12조제3항·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·제2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·공보·게시판·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

제18조(공표방법 등) -----

한다.	<p>-----</p> <p>----- <u>이상 게재하고</u></p> <p><u>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</u> -</p> <p>-----.</p>
-----	--

관례법령

□ 주민투표법

제7조(주민투표의 대상)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 <개정 2016. 5. 29.> 1.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. 행정기구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·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6. 동일한 사항(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

제9조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"주민투표청구권자"라 한다)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12.> 1. 삭제 <2009. 2. 12.> 2. 삭제 <2009. 2. 12.>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2009. 2. 12., 2016. 5. 29.>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.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

- 기본방향 :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·운영방안 마련
 - 추진방안
 - (정비)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 자체 검토 후 정리 또는 활성화
 - ▶ 실효성·안전 특성 등에 따라 폐지, 협의체 전환, 비상설화 등 조치
 - ▶ 유사·중복 위원회는 통·폐합*,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 마련
- * 다만,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,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통합 운영 불가(예: 도시계획위원회)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조 례 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

○ 성 명(단 체 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의 견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- 944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2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등 신설(안 제5조의2)
- 나. 시장의 인정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(안 제10조, 제10조의2)
- 다. 상인회의 등록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(안 제26조, 제26조의2)
- 라.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정산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변경(안 27조)
- 마.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 신설(안 제33조, 제33조의2)
- 바.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(안 제34조의2)

3. 근거법규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의2, 제17조의2, 제38조의2, 제65조, 제68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경제일자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제출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경제일자리과(우 44248)

2) 전화번호 : 052)241-7702, 팩스번호 : 052)241-7709

6. 참고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- 붙임 1. 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 2. 신·구조문 대비표
 3. 근거법규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)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),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이 명시된 동의 철회요청서
2.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
 - 가.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.)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- 나.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나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
3.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10조제1항 중 “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”을 “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거친다”를 “거쳐야 한다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인정취소의 절차)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,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시장·상권활성화구역·상점가의 상인회(이하 “상인회”라 한다)”를 “상인회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상인회 등록취소의 절차)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4항 중 “14일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3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)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시장관리자는 제33조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34조의2(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5조의2(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)</u>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토지등 소유자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),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이 명시된 동의 철회요청서</u> 2. <u>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<u>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.)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</u> 나. <u>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나 「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</u> 3. <u>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인정시장의 인정취소) ① <u>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.</u> 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인정시장의 인정취소) ① ----- <u>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-----.</u> ② ----- ----- ----- <u>거쳐야 한다.</u> <u>제10조의2(인정취소의 절차) ①</u> <u>구청장은</u> <u>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</u> <u>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</u> <u>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,</u> <u>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</u> <u>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상인회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</u> <u>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</u> <u>시장 인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</u> <u>반납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23조(상인회의 설립) ① <u>시장· 상권활성화구역·상점가의 상인회</u> <u>(이하 “상인회”라 한다)는 시행규칙</u> <u>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</u> <u>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.</u> ② (생 략)</p>	<p>제23조(상인회의 설립) ① <u>상인회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상인회의 등록취소)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.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6조(상인회의 등록취소)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26조의2(상인회 등록취소의 절차)</p> <p>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② 상인회 대표자는 제26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예산의 지원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, 부가가치세환급금,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(예산의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2 개월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3조(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)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.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. 다만,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. 3.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3조(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.</p> <p>제33조의2(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)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② 시장관리자는 제33조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4조의2(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)</u></p> <p><u>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.</u></p>

근거법규

[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]

제10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
2.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8.]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 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

제3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)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8.]

제65조(상인회)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>

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8., 2018. 6. 12.>

1.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
2.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
3.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
4.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
5.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(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6.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7.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

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
2.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3.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
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
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9. 1. 8.>

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1. 8.>

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 1. 8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68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상인 및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3.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
4.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8.]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의 견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